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1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의 원 : 이우완 · 구점득 · 권성현 · 김경수 · 김경희
김상현 · 문순규 · 서명일 · 심영석 · 오은옥
이원주 · 이정희 · 이종화 · 이천수 · 전홍표
정길상 · 최은하 · 한상석 · 한은정 ·
홍용채 의원(20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

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영 세칙 등) 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하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

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

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의사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이우완 의원)

의사입법담당관-3754(2025. 6. 13.)호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개정 개요

조례안	발의자	부서 검토의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 검토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 관련법령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종합의견 : 붙임 검토보고서 참조

붙임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이윤용

의회협력팀장

박영수

정책기획관

전결 2025. 6. 26.

김태호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8883

(2025. 6. 26.)

접수 의사입법담당관-4033

(2025. 6. 26.)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yunpang@korea.kr

/ 비공개(5)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의원 발의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이우완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상정시기 : 2025. 7월 임시회
- 주요내용 : 총 7개 조문

연번	주요 내용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법」시행령 제10조제5항 위임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안 제3조~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제1부시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운영 ▶ (당연직)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위촉직)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사람 중에서 위촉

□ 검토 사항 및 의견

- 관계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검토 의견 : 조례안 수용

창원시 지하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공공 안전 강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도입의 취지적 측면)** 지하 공간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바, 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지하 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위원회 설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하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제적 측면)** 본 조례안은 창원시 지하안전관리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이우완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5. 6. 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권신민 입법지원팀장 장설민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전결 2025. 6. 13.
협조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시행 의사입법담당관-3754 (2025. 6. 13.)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4 팩스번호 055-225-4743 / smkwon25@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의 원: 이우완 의원

찬 성 의 원: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

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영 세칙 등) 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하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 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

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

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